

# I . 한시 생계지원 기준

## 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소득기준)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충족

(중복불가)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재난지원금\_(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지원) 저소득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재산기준 지역 구분>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도농복합 '군' 포함) ⇒ 6억원 이하  
예)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5억원 이하  
예)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예)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b>1. 신청사유</b>		<b>2. 소득 기준</b>		<b>3. 재산 기준</b>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소득 감소자(휴·폐업 등)	+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1. 신청 사유

####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중복대상 사업>

-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임업인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도 중복대상에 포함 (45만가구)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2.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 [사례 참고] 근로·사업소득 감소 사유

사례 1) 19년 6월 이전 실직하여 현재도 실직한 경우(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사례 2) 19년 7~12월 말까지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경우

-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제 근무개월수) 또는 ② 19년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사례 3) 19년 3월 18일~10월 5일까지 근로, 이후 실직하여 '20년 1월 재취업 ~ 5월까지 근로소득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실직상태

-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실근무개월) 또는 ② 19년 3~10월 평균소득(월 또는 평균) 또는 ③ 20년 1~5월 평균소득(20년 1월~5월 합계소득 ÷ 5개월)

사례 4) 장기간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여 현재도 계속 실직인 상태

- ▶ 최근 소득 - 21년 1~5월 소득 0원(현재 실직 중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증빙),
- ▶ 비교소득 ① 19년도 평균소득(연간합계 소득 ÷ 12개월) 또는 ② 20년 1~2월 평균소득(20년 1월~2월 합계소득 ÷ 2개월)

사례 5) 농업소득 감소 인정 여부

- ▶ 농업소득자의 경우 최근소득(21년 1~5월)과 비교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청 또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결정 가능

사례 6) 근로유형 변경 인정 여부

- ▶ '20년 일반 근로소득자가 '21년 현재 자영업으로 근로유형이 변경되었을 때 비교기간(근로소득)과 최근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 가능

## V. 제출서류

### 46.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같음), ②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 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등,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 소득감소 증빙자료 ]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 (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만 확인

## VI. 결정 및 지급

### 52. 적합·부적합(지급·미지급) 결정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신청 시 등록(제출)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통보합니다.

- 신청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도 가능합니다.

▶ (1차 통보) 공적자료 조회 결과 부적합 대상 가구에 문자로 통보하게 되며,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대상 가구로 결정

▶ (2차 통보) 타 사업 중복조회, 심의위원회 결과 등으로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 후 문자 통보

- 적합 가구에는 지급 일정 등 안내

- 부적합 가구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함을 안내

### 53. 한시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여부 】

구분	사업급여(대상자)	중복수급 가능 여부	비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가구원 중 생계급여 수급자(21.5.9. 기준 급여자격)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 지원사업	○	급여액이 있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산정
긴급복지	생계지원	×	5월 중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는 중복 불가
연금	기초연금	○	연금액 전액 소득으로 산정
	장애인연금	○	
2021년 재난지원 사업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 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중사 자생계지원 (중기부) 버 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 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수혜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개별수급 인정 않음)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지원 경영지원 바우처	△	30만원을 지원 받은 가구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 이 되는 경우 차액 20만원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대학생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근로장학금으로 중복 가능
기 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직종으로 지원 불가대상을 구분하지 않음
	공공일자리	○	정부재정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